

대구예술대학교 축구부 운영 규정

(제정 2018.10.11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1.22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19.11.28. 학교법인)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축구부(이하“축구부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

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11.14.)

제2조(명칭) 대구예술대학교 축구부(이하 “축구부”)라 한다

제 2 장 재정

제3조(축구부 재정) 축구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등록금 및 후원금 그리고 자체 회비로 하며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(개정 2019.11.14.)

1. 삭제(개정 2019.11.14.)

2. 삭제(개정 2019.11.14.)

3. 삭제(개정 2019.11.14.)

제 3 장 자격 요건

제4조(축구부 자격) 축구부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선발된 학생으로 한다. (개정 2019.11.14.)

1. 우리대학에 축구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(개정 2019.11.14.)

2. 우리대학에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선수 등록을 필한 학생. (개정 2019.11.14.)

제 4 장 축구부운영 및 관리부서

제5조(축구부운영 및 관리부서) 축구부 운영은 사회체육전공 주임교수 책임 하에 운영관리 하며, 행정사무는 학생처에서 담당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(개정 2019.01.22.)(개정 2019.11.14.)

제 5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축구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구부 운영위원회를 둔다(개정 2019.11.14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 한다.

1. 대학 당연직위원 : 학생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사회체육전공주임교수

2. 외부 당연직위원 : 학부모 대표(2인 이하)(개정 2019.11.14.)

- 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학생처장이 맡는다.(개정 2019.11.14.)
-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(개정 2019.11.14.)
- ⑤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(개정 2019.11.14.)
- ⑥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담당한다.(개정 2019.11.14.)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축구부 발전 및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11.14.)
- 2. 축구부 재정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11.14.)
- 3. 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(개정 2019.11.14.)
- 4. 축구부와 관련한 규정류의 심의 및 개정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11.14.)
- 5. 기타 축구부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19.11.14.)
- 6. 삭제
- 7. 삭제

제8조(운영위원회 개최 및 의사·의결 정족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되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다.

③ 위의 ①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 한 경우, 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제9조(기타) 축구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.10.1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개정 규정은 2019.01.22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개정 규정은 2019.06.2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개정 규정은 2019.11.28.부터 시행한다.